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26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복권수익금을 통한 중증·희귀질환자 보험급여 지원 ..... | 3 |



## I. 개요

### 1.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126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12. 31.
- (3) 회 부 일 : 2025. 1. 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속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복권수익금을 통한 중증·희귀질환자 보험급여 지원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생략)                                  |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② -----<br>-----<br>-----<br>-----있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④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                                               |

| 현행 | 개정안                                                                                                                                                                |
|----|--------------------------------------------------------------------------------------------------------------------------------------------------------------------|
|    | <p><u>익금을 배분받은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u></p> <p>1. <u>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u></p> <p>2. <u>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u></p> |

※ 시행일 : 2025. 7. 1.

## 나. 검토의견

- 「희귀질환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sup>1)</sup>에서는 “희귀질환”을 유병(有病)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질환에 대한 유병인구 수,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1,314개 질환이 지정되어 있음.

1)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①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환에 대한 유병(有病)인구 수
  2.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3. 삭제 <2023. 3. 8.>
  4.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5.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
  6. 그 밖에 질환의 원인,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희귀질환 지정을 원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온라인정보시스템(이하 “온라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희귀질환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중증난치질환”에 대하여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별표4의2에 해당 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sup>2)</sup>, 암, 중증화상, 심장질환, 중증외상 등이 규정되어 있음.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관련 수진자 수 및 공단부담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수진자 수는 192만 6,561명(연인원 기준)으로 공단부담금은 7조 1,914억 3,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연도별 희귀·중증난치질환 관련 수진자 수 및 공단부담금 지급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 지급년도 | 수진자 수   |           | 공단부담금     |           |
|------|---------|-----------|-----------|-----------|
|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 2020 |         | 1,337,956 |           | 5,204,756 |
|      | 629,099 | 708,857   | 1,222,280 | 3,982,476 |
| 2021 |         | 1,626,656 |           | 5,711,576 |
|      | 834,961 | 791,695   | 1,464,900 | 4,246,676 |
| 2022 |         | 1,740,853 |           | 5,942,159 |
|      | 902,933 | 837,920   | 1,553,904 | 4,388,255 |
| 2023 |         | 1,887,177 |           | 6,867,572 |
|      | 991,863 | 895,314   | 1,892,220 | 4,975,352 |
| 2024 |         | 1,926,561 |           | 7,191,431 |
|      | 998,851 | 927,710   | 1,990,395 | 5,201,03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5조의3(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으로 별표4의2에 해당 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고가 약제를 급여화하고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sup>3)</sup>

□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복권법에 따른 현행 복권수익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수익금의 35%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또는 기관에 배분되고(법정배분사업), 그 밖의 복권기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등을 위한 공익사업에 배분되고 있음<sup>4)</sup>.

참고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

3) 보건복지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한다”, 2025. 1. 7.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22~2026)」, 2022. 2.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분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분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정을 통해 복권 발행권한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면서 기존에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 복권 폐지를 전제로 수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이후 2009년에는 문화재보호기금을 법정배분대상으로 추가하면서 복권수익금 중 법정배분비율을 30%에서 35%로 상향하고 기존 지원대상 기금·단체에 대한 배분비율을 한 차례 하향조정 한 바 있음.

- 2024년 기준 법정배분사업(복권법 제23조제1항)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총 1조 40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공익사업(복권법 제23조제3항)에는 주택도시기금 등에 총 2조 801억원이 지원되었음.

#### < 2024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지원 현황 >

| 법정배분사업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합계              | 8,103 | 9,551 | 10,338 | 10,402 |
| 과학기술진흥기금        | 942   | 1,012 | 1,100  | 1,251  |
| 국민체육진흥기금        | 886   | 938   | 915    | 920    |
| 근로복지진흥기금        | 532   | 598   | 644    | 635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637   | 747   | 789    | 728    |
| 국가유산보호기금        | 929   | 1,406 | 1,583  | 1,526  |
| 지방자치단체          | 1,415 | 1,528 | 1,753  | 1,700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1,288 | 1,679 | 1,770  | 1,796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515   | 553   | 587    | 701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384   | 401   | 472    | 417    |
| 산림환경증진자금        | 575   | 691   | 726    | 730    |

자료: 기획재정부

< 2024년 복권기금 공익사업 지원 현황 >

| 공익사업         |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합계           |          | 17,972 | 19,949 | 20,109 | 20,801 |
| 저소득층<br>주거안정 | 주택도시기금   | 5,504  | 5,504  | 4,500  | 4,500  |
| 국가유공자<br>복지  | 보훈기금     | 384    | 162    | 229    | 221    |
| 저소득·<br>소외계층 | 양성평등기금   | 4,673  | 5,956  | 6,300  | 7,378  |
|              | 청소년육성기금  | 1,279  | 1,358  | 1,495  | 1,484  |
|              | 기후대응기금   | -      | -      | 956    | 1,083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1,000  | -      | -      |
|              | 금융위원회    | 2,670  | 2,365  | 2,125  | 2,120  |
|              | 보건복지부    | 805    | 712    | 917    | 1,134  |
|              | 교육부      | 995    | 1,061  | 1,154  | 324    |
|              | 법무부      | -      | 15     | -      | -      |
|              | 고용노동부    | 21     | 21     | 21     | -      |
| 문화·예술<br>진흥  | 문화예술진흥기금 | 1,642  | 1,739  | 2,357  | 2,488  |
|              | 영화발전기금   | -      | -      | -      | 54     |
| 자연·사회<br>재난  | 응급의료기금   | -      | 58     | 56     | 16     |
|              | 행정안전부    | -      | -      | -      | -      |

자료: 기획재정부

□ 2024년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2028)’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개혁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입 소요 등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예정이며, 특히,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약품비 및 보험급여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보험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재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sup>5)</sup>

-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건강보험 총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음.<sup>6)</sup>

#### <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 >

(단위: 억원, 개월)

| 구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
| 총 수입     | 988,955 | 1,045,611 | 1,115,354 | 1,183,196 | 1,252,201 |
| 총 지출     | 962,553 | 1,040,978 | 1,118,426 | 1,191,091 | 1,268,037 |
| 당기수지     | 26,402  | 4,633     | △3,072    | △7,895    | △15,836   |
| 준비금      | 306,379 | 311,012   | 307,940   | 300,045   | 284,209   |
| (지급가능월수) | (3.8개월) | (3.6개월)   | (3.3개월)   | (3.0개월)   | (2.7개월)   |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암 및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한 급여 약품비는 각각 3조 8,402억원, 2조 5,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와 9.7%씩 증가하여 전체 약품비 증가율(8.5%)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7)</sup>

#### < 연도별 암·희귀난치환자 약품비 현황 >

(단위: 억 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암환자 약품비<br>(증가율)    | 28,804<br>(8.7) | 31,870<br>(10.6) | 34,665<br>(8.8) | 38,402<br>(10.8) |
| 희귀난치환자 약품비<br>(증가율) | 19,645<br>(6.9) | 21,620<br>(10.1) | 23,239<br>(7.5) | 25,492<br>(9.7)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5)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복권수익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6)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2024.2.2.

7)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 전년보다 8.5% 증가...암·희귀질환 약품비 지출 꾸준히 증가 추세, 2025. 1. 16.자 보도자료

□ 다만, 복권법에 법정배분비율이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되어 있고, 복권법 시행령 제17조<sup>8)</sup>에서 배분대상 기금 및 기관별 배분비율을 명시하고 있는데, 배분대상 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여 규정할 경우 기존 배분대상 기금·단체에 대한 배분비율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복권기금 배분을 통해 수행중이었던 사업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수혜기관 등의 반발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기존 배분대상인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경우 복권수익금을 통한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비가 아닌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등 기금전출의 필요성이 적어 법정배분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sup>9)</sup>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복권기금의 배분대상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124호)이 제출되어 현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금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금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결과

9) 국회예산정책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4.

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 및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복권수익금 지원에 동의함. 다만, 개정안은 복권수익금 사용처를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급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규 약제의 보험등재 등에 따라 질환별 급여비 변동이 클 수 있어 재정소요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질환을 지정하는 대신 중증·희귀질환 분야에 포괄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기획재정부

-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 복권 폐지를 전제로 수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법정배분기관의 추가는 법정배분제도 도입 취지, 기존기관에 대한 배분 비중 축소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권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필수 고가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재원으로 활용 필요성에 공감함. 특히, 정부는 최근 중증·희귀난치성질환 고가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복권기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함.

## □ 대한의사협회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건보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복권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03 |

□ 복권법에서 정한 **법정배분사업**(35%)과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65%)으로 구분하여 기금운용

\* '04년 복권법 제정시, 법제정 이전 복권을 발행하고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 발행복권의 폐지를 전제로 복권기금 일부를 법정배분토록 제도화

- (**법정배분사업**)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 배분  
: 칸막이식 재원배분에 따른 경직성·비효율 완화를 위해 『법정배분비율  $\pm 20\%$  가감조정제』 도입('11.3월, 복권법 개정)

- (**공익사업**) 복권수익금의 65%는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

\* 복권법상 지원대상(공익사업) : ①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②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③ 국가유공자 복지 ④ 문화예술진흥 등

## 참고2

## 현행 복권수익금 법정배분기관 현황

| 법정배분기관                 | 배분비율<br>(35% 기준)    | 용도                                                                                                                                                                    |
|------------------------|---------------------|-----------------------------------------------------------------------------------------------------------------------------------------------------------------------|
| 1. 과학기술진흥기금            | 12.583%<br>(4.4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li> </ul>                                                                |
| 2. 국민체육진흥기금            | 10.371%<br>(3.6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li> <li>■ 국민체육시설 확충</li> <li>■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li> <li>■ 생활체육 보급 및 진흥</li> <li>■ 국내외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li> </ul> |
| 3. 근로복지진흥기금            | 5.310%<br>(1.85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 등</li> </ul>                                                                                                    |
| 4.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6.356%<br>(2.2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창업지원</li> <li>■ 중소기업 구조고도화</li> <li>■ 지방중소기업 육성</li> <li>■ 산업기반 조성</li> </ul>                                           |
| 5. 국가유산보호기금            | 14.286%<br>(5.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등</li> </ul>                                                                                               |
| 6. 지방자치단체              | 17.267%<br>(6.0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문화·예술·복지</li> <li>■ 지역개발사업</li> <li>■ 그 밖에 공익목적 사업</li> </ul>                                                            |
| 7. 제주특별자치도<br>개발사업특별회계 | 17.267%<br>(6.0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등</li> </ul>                                                                                 |
|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4.286%<br>(1.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li> </ul>                                                                                                            |
| 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5.846%<br>(2.04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 조성, 산림복지진흥 사업 등</li> </ul>                                                                                    |
|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6.428%<br>(2.2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진료, 건강관리, 보호, 복지시설 운영 등</li> </ul>                                                                                     |
| 계                      | 100%<br>(35%)       |                                                                                                                                                                       |

자료: 기획재정부